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 . . (제 회)	

청 소 년 지 도 자 의 처 우 및 지 위
향 상 을 위 한 법 률 시 행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성평등가족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제정이유

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등을 통한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이 제정(법률 제21602호, 2026. 4. 28. 공포, 2027.1.1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(안 제1조 신설)
- 나. 청소년육성 업무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아동·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추가(안 제2조 신설)
- 다. 중앙 및 지방에 두는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 구성·운영 사항(안 제3조 신설),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대한 조사·공표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4조 신설),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 기준 마련(안 제5조 신설)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2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안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청소년시설등) 「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5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육성 업무 관련 단체 또는 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.

1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교육전문기관
2.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육성 업무 관련 단체 또는 기관으로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

제3조(성평등가족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)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(이하 이 조부터 제3조의3까지에서 “중앙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 차관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2.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

가. 청소년지도자로 구성된 단체

나. 청소년시설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

다.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

3.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

4.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(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)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

④ 중앙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⑤ 중앙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⑥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.

제3조의2(중앙위원회 위원의 해임·해촉)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중앙위원

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3조의3(중앙위원회의 회의 등)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.

1.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2.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
3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

④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중앙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청소년지도자 등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⑥ 제3조, 제3조의2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

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.

제3조의4(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)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(이하 이 조 및 제3조의5에서 “지역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
2. 그 밖에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2.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

가. 청소년지도자로 구성된 단체

나. 청소년시설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

다.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

3.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

있는 사람

4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
제3조의5(지역위원회의 운영 등) ① 지역위원회 위원 임기, 해임·해촉,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, 제3조의2 및 제3조의3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중앙위원회”는 “지역위원회”로, “성평등가족부장관”은 “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”으로 본다.

② 제3조의4, 이 조 제1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.

제4조(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) 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.)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법 제2조 각 호의 시설등(이하 “청소년시설등”이라 한다)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청소년시설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③ 실태조사는 자료조사, 설문조사 또는 면접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④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, 법인·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⑤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청소년시설등에서의 청소년지도자의 고용 형태, 근로시간, 휴가·휴직 등 근로여건
2. 청소년시설등에서의 청소년지도자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
3. 법 제5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의 보수에 관한 지침의 지방자치단체 별 준수율
4. 그 밖에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사항

⑥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.

1. 성평등가족부장관: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
2. 지방자치단체의 장: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·내용 및 그 결과의 공표 방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.

제5조(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)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의 보수수준과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청소년지도자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과	
연 락 처	(02) 2100 - 6232